

임시허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사업장 소재지 (우편번호)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전자우편
신기술·서비스	명칭		
	유형	[] 기술인 경우 [] 서비스인 경우 []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	
	주요 내용		
임시허가 신청 사유	[] 1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맞는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는 경우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3조제1항제1호)		
	[] 2.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·규격·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맞지 않은 경우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3조제1항제2호)		

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1부 가.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. 해당 신기술·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가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.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.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환경·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·처리에 관한 자료
------	--

처리절차

